

商事仲裁判定의 實例

—商事仲裁協會의 判定을 中心으로—



崔基元

(서울大 法大 教授)

韓國 商事仲裁判定의 事例

一. 序 說

商事仲裁라 함은 「商去來에 있어서 발생하는紛爭에 관하여當事者が事前 또는 紛爭發生후에任意로 선정한 第三者인私人에게 그 紛爭의解决을 委任하고 그 判定에 服從하는 私的紛爭解决手段」을 말한다.

訴訟에 갈음하여 이러한 制度가 發展된理由는 다음과 같은 特有한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商事仲裁는 訴訟과 비교할 때, 첫째, 專門性을 띠고 있다. 즉 오늘날 商去來는 고도로 복잡화되고 專門化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法官에 의한 去來實情에 맞지 않는 嚴格한 法律의 判斷보다도 商去來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者의合理的인 判斷이 요구되는데 商事仲裁判定者는 이에 적합하고, 둘째, 그 簡易性을 들 수 있다. 商事紛爭을 商事仲裁에 의하면迅速하고 원활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費用도輕減되어,裁判의 경우와 같이 「勝訴하여도 財產上損害」를 보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 셋째, 그 秘密性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訴訟의 경우와 달리 仲裁는 公開를 하지 않음으로써當事者の 信用과 威信을保持할 수 있게 된다.

넷째, 商事仲裁는 相互友好的in 解決이 가능하므로 商去來에서 重視되는 去來의 繼續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商事仲裁는 國際的 性格을 가진다. 즉 商事仲裁制度의 利用을 通하여 國際去來에서 가장 어려운 法制의 相違를 克服할 수가 있다. 이 點이 商事仲裁制度의 가장 뛰어난 長點이며 商事仲裁制度가 보급된 가장 큰 理由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友好的 紛爭解決手段으로서 調停・和解 등이 있으나 이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當事者が 判斷主體이며 第三者は 補助的 역할밖에 못한다는 점에서,裁判과 같이 仲裁人の 判定에 복종하여야 하며 또 그 判定에 執行力이 있는 商事仲裁制度의 長點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商事仲裁에 의하여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紛爭의 발생前 또는 發生後에當事者間에 仲裁에 대한 合意가 있어야 한다. 이合意는裁判權을 權利를 포기하고 仲裁判定에 服從하겠다는 意思表示이므로 이 合意의 대상이 되는 權利關係는當事者が任意로 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仲裁判定은 仲裁法・大韓商事仲裁協會 仲裁規則・外國과의 條約 등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내려지며 일단 내려진 仲裁判定은 形式的確定力を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判定은 國內當事者들 사이에서는法院의 判斷을 받아, 外國과의 紛爭에서는 執行地國法院의 判斷을 받아 執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法院의 判斷은 消極的인 것으로 取消事由에 해당하지 않는 한 執行判決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大韓商事仲裁協會가 判定한 外國과의 주요 商事仲裁判定事例의 개요를 原因別로 紹介하고자 한다.

二. 主要 商事仲裁判定 事例

[1] 品質不良事例

1. 腐敗性食品에 대한 船積指示 및 着地検査遲延의 責任.

提起商社 : S商社(日本)

被提起商社 : D商社(國內)

提起原因 : 船積指示 違反 및 船積食品의 腐敗變質.

請求全額 : \$ 25,080

判定要旨 : 船積指示 및 品質不良의 별다른 證據가 없어 S商社의 請求를 棄却한다.

〈經緯〉

日本의 S商社와 國內 D商社는 꽃게 輸出入을 다음과 같은 信用狀上의 條件으로 契約하였다.

① 品目 및 數量 : 꽃게 12,000kg

② 單價 : US \$1.90 C&F Japanese Part

③ 船積條件 : Buyer's shipping instruction for each shipment cable by the buyer.

④ 船積期限 : 1972. 8. 31.

그런데 S商社의 船積指示가 2번에 걸쳤으므로 D商社는 合計量인 12톤을 8月 31日 船積하고 9月 1日 S商社에 通知하였다.

이에 S商事는 船積指示에 6톤에 限하였다고 主張하고 또 나머지 6톤도 冷凍 container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어 商品으로서의 價値가 損失되었으므로 이를 引受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證明하기 위하여 日本海事檢定協會神戶支部의 鑑定書를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D商社는 信用狀上 數量이 12,000kg이며 6,000kg을 두번 指示하였으므로 12,000kg을 船積한 것은 당연하며 또 船積條件이나 船積指示電文에서 船便에 관한 別途指示가 없었을 뿐 아니라 當時 韓·日間에는 冷凍 container는 使用

되지 않았고 到着後 29時間이 지난 후에야 檢查한 結果로 인한 鑑定書는 그妥當性이 없다할 것이므로 그 責任은 請求人 S商社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仲裁判定部는 S商社와 D商社사이에 冷凍 container에 대한 合意가 없었으며 또 丁號 소속의 dry container로 운송하였기 때문에 變質되었다는 證據도 없고 꽃게가 商品性을 잃었다는 것도 到着 29時間 후의 鑑定書 記載로서는 斷定치를 수 없으며 船舶到着日이 日曜일이었다는 理由만으로 荷役作業을 하지 않았음은 不當하다고 判定하고 數量에 관하여도 2번째의 指示에 再確認을 意味하는 文句가 없고 12,000kg이란 記載外에 別다른 文面이 없었다는 點으로 보아 S商社의 請求가 理由없다고 判定하였다.

2. 輸出商品의 品質不良에 대한 實渡人の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 : A商社(和蘭의 輸入商)

被提起商社 : B商社(國內)

提起原因 : 輸出商品의 品質不良에 대한 實渡人の 損害賠償

請求金額 : US \$ 5,269

判定要旨 : A商社가 별반 證據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B商社는 A商社에 US \$ 1,800을 지급한다.

〈經緒〉

和蘭의 A商社는 오퍼상 J와 韓國產 장갑을 수입하기 위한 合意를 보고 貿易登錄業者인 國內 B商社와 契約을 맺었다. 이에 따라 A商社는 B商社를 受益者로 하는 信用狀을 開設하는 한편 B商社는 J가 조달한 장갑의 船積期限인 1973年 12月 31日字로 船積하고 上記 信用狀 金額을 割引하여 J에게 조달하였다. 그런데 장갑이 和蘭에 도착한 後 A商社가 檢查한 결과相當한 分量이 不良品인 것을 發見하고 그 후相當한期間이 경과한 후의 檢查機關의 檢定에 의하여 장갑 總量 36,000켤레 中 22,425켤레가 品質不良品임이 發見되었다. 이에 A商社가 B商社에 claim을 提起하자 B는 J에게 問意하게 되고 J는 그中 2,000켤레분은 契約과 다른 種類의 物品임을 自認하므로 B商社는 A商社에 대하여 辨償할 意思를 表示하였다. 그러나 A商

社는 全體가 不良品임을 主張하고 仲裁를申請하였다.

A商社는 B商社가 비록 貿易代行機關의 役割만을 했더라도 自己의 名義를 用以上對外業者에 대한 責任은 마땅히 저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國際公認検査機關의 檢定結果를 提示하면서 輸入總金額 US \$ 10,800, 諸費用 \$ 1,340,豫想利益 \$ 2,060의 合計에서 不良品으로 廉賣處分한 US \$ 8,931을 除外한 US \$ 5,269를 請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B商社는 同 장갑이 기계로 製造된 것이므로 申請人이 주장하는 만큼의 많은 不良品이 나올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또 商品轉賣日字가 物件到着日로부터 무려 7~8個月이 경과한 후인 1974年 10月 8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檢定期日은 그로부터 1個月 가량이 지난 후라는 것은 到着 당시의 物件의 狀態를 알 수 없을뿐 아니라 檢定報告書도 信憑性이 없음을 말해 준다고 主張하였다.

仲裁判定部는 첫째, 物品의 損害의 賠償請求에 대하여는 A商社가 B商社로부터 求償 받으려면 당초부터 引受를 拒絕하거나 引受를 하고 그 損失을 公正히 立證하여 그 差額을 請求할 수 있는데 A商社는 引受를 하고도 지체없이 처분하지를 않았을 뿐 아니라 또 轉賣후에야 비로소 檢查를 받았다는 것은 買受人으로서 最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A商社가 請求한 關稅, 運賃 및 檢查料 등의 費用에 대하여는 이 費用 全部가 B商社가 負擔할 것이 아니고 物品의 瑕疵部分에 該當하는 比率만이 B商社가 負擔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A商社가豫想利益金條로 申請한 金額에 대하여는 本來 예상이익이라는 것은 그 內容이 具體的으로 立證되지 않는限 全部 認定되는 것이 困難한 바 A商社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證據나 資料를 提示하지 않고 있어 諸般 事情과 與件을 參酌하여 判斷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仲裁判定部는 B商社가 A商社에 대하여 US \$ 1,800을 支給할 것을 判定하였다.

3. 輸出合板의 接着劑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損害에 대한 買受人の 瑕疵通知義務와 立證

責任.

提起商社: 캐나다 O商社

被提起商社: 國內 X商社.

提起原因: 輸出合板의 接着劑에서 생긴 惡臭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金額: US \$ 196,554.42

判定要旨: O商社의 請求는 이유없으나 善과 公平의 원칙에 따라 US \$ 10,560.00의 청구를 인정한다.

〈經緯〉

캐나다의 合板 輸入商인 O商社는 國內의 X商社와 外裝用合板을 輸入하는 契約을 締結하고 X商社를 受益者로 하는 信用狀을 開設하였으며 이에 X商社는 合板을 船積한 후 代金을 引受하였다. 그런데 同 合板에 使用한 接着劑 「포멜디하이드」의 惡臭가 캐나다의 온테리오洲의 保健省과 勞動省이 訴容하는 基準인 2p.p.m을 超過하여 販賣制限을 받는 한편 顧客들의 불평이 심하여豫定한 대로의 販賣가 不可能하게 되자 O商社는 X商社에 이의 原狀回復이나 損害賠償을 請求하게 되었으며 그 후 訪問한 X商社의 P專務가 그 超過可能性을 示唆하고 그 程度의 損害는 賠償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兩者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자 O商社는 仲裁를 申請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O商社는 合板의 賣買가 Sale by Description으로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은 X商社側에 있다고 하면서 X商社가 텔레스로 알려온 方式에 의하면 惡臭問題는 發生하지 않았으리란 點, X商社의 P專務가 惡臭問題를 自認한 點, O商社는 從前에는 內裝用合板만 輸入했을 뿐 外裝用合板은 처음이라는 點, 「포멜디하이드」의 檢出量이 2p.p.m以上이면 健康에 有害要因이 되는 것은一般的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이의 責任을 回避하는 것은 人間을 위한 保健制度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된다는 點, 또 X商社가 이 問題에 관해 誠意있는 態度를 보인 바가 없다는 點 등을 들어 X商社의 賠償責任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X商社는 同一한 生產品을 他會社에서도 輸入했으나 여하한 claim도 提起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이 claim은 國際合板時勢의 急變으로 인한 損失을 轉嫁시키려는 마아켓 클레

임이라고 주장했다. X商社는 O商社에 見本 및 說明書를 送付하여 充分한 知識을 提供하였던 바 O商社가 涼새에 관하여는 主知시킨 적이 없다는 點, 合板의 惡臭除去問題는 장차의 相互研究課題로서一般的으로 主知의 事實이라는 點, O商社가 外裝用 보다 더 惡臭에 敏感한 内裝用合板을 輸入해 간 적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하등의 claim도 提起하지 않았다는 點, X商社의 同意 없이 行해진 어떠한 調査도 公信力이 없다는 點등을 들어 請求의 排斥을 主張하였다. 仲裁制定部는 O商社側이 提示한 證據資料들을 檢討하여,

첫째, 「포멜 디하이드」의 許容基準인 2p.p.m. 을 超過한 그 惡臭때문에 販賣制限을 받았다는 點을 證明하기 위한 保健當局의 書信과 現場踏査報報書에 대하여는 要證事實과는 無關한 書面임을 확인하여 販賣制限을 받았다는 陳述은 真實이 아니라고 判斷하였고

둘째, O商社가 主張한 바와 같이 顧客들로부터의 不平때문에 合板이 回收·反送되었으며 그中 60%는 헐한 값으로 轉賣할 수도 없어 아직도 倉庫속에 쌓여 있다는 點을 證明하기 위한 6mm合板의 返還通知書등이나 倉庫의 保管證書에 관하여는 返還通知書에는 X商社에서 輸入한 合板임이 明示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實際로 返還되었다는 記載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倉庫에 保管되어 있는 合板을 證明하는 書面도 오히려 11,600枚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어 90%가 차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이들 文書에는 公證이 없었다는 點등으로 보아 그 要證事實을 뒷바침할 수 없다고 判斷하였으며,

셋째, 「포멜 디하이드」의 測定方法이 正確한 것이 없는 데도 不拘하고 그것이 캐나다에서 公的으로 制限되어 있다면 당연히 契約에 그러한 內容을 插入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條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넷째, O商社는 本件 賣買가 英國動產賣買法上의 Sale by Description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契約內容中 英國動產賣買法을 準據法으로 한다는 條項이 없고 또 英國法에 의하더라도 買受人을 보호하는 Sale of Description의 規定뿐 아니라 賣渡人을 보호하는 買受人の 通知義務制度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O商社가 X商社에 遲滯 없이 通知를 하지 않은 以上 그 責任을 X商社에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고 보아 O商社의 請求는 理由 없다고 判定하였다.

그러나 仲裁判定部는 國際來에 있어서는 特히 信義에 따라 誠實하게 行動해야 하는 바 X商社側에서 價格下落으로 因한 O商社의 損失을 어느 程度 補償하겠다는 意思를 表示했고 事實上 合板에 「포멜 디하이드」의 惡臭가 있어 고객으로부터 不平이 있었다는 事實, 또 X商社의 P專務가 어느 程度 그 超過使用을 是認했다는 事實 등을 고려하여 善과 公平의 原則에 따라 一枚당 US\$ 3.00씩 減額한 總額 US\$ 10,560.00의 請求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判定하였다.

4. 商品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 : 華란 D商社

被提起商社 : 國內 Y商社

提起原因 : 輸入品의 品質不良

請求金額 : US\$ 17,700

判定要旨 : (和解하여 判定의 形式으로) Y商社는 US\$ 5,310을 D商社에 지급한다.

〈經緯〉

화란의 D商社는 國內 Y商社로부터 女子用鞋 터를 輸入하였으나 거의 全量이 不良品이어서 화란 내에서는 도저히 販賣할 길이 없으므로 Y商社에 대해 即時返送하여 갈 것과 이去來로 인한 損害賠償金 即 L/C 金額 \$12,700, 輸入通關費用 \$3,000, 其他 利子 및 利益金 \$1,200의 合計 \$17,700을 要求하여 왔다. 그러나 Y商社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D商社는 仲裁를申請하게 되었다. D商社側은 品質不良을 證明하기 위한 國際的인 檢定機關의 檢查報告書를添附하고 또 Y商社 輸出課長이 구라파여행 中 D商社를 들러 claim을 是認, 受諾한 바가 있음을 主張했다.

이에 대하여 Y商社는 問題의 商品이 船積前 國內 檢查機關의 檢查에 合格한 合格品이고 同商社의 輸出課長이 claim을 受諾한 事實이 없고 단지 次後去來에서 一定額을 割引하여 주기로 約束한 事實만 있다고 主張했다.

仲裁制定部는 D商社가 提示한 Survey Report

를 檢討한 結果 約 45%가 不良이라는 事實과 또한 同 檢定會社가 國際的으로 권위있는 機關임을 參照하여 30%의 賠償선에서 兩者의 和解를 成功시켜 紛爭을 一段落지었다.

5. 信用狀 讓渡의 效果와 輸出代行者の 責任.

提起商社 : 美國 B商社

被提起商社 : 國內 N商社

提起原因 : 輸出商品의 不良

請求金額 : US \$ 2,000

判定要旨 : 免責特約이 B商社사이에 맺은 것
이 아닌 한 責任을 벗어날 수 없으
나 B商社의 請求가 立證이 곤란하
므로 N商社는 B商社에 US \$ 1,
000을 지급한다.

〈經緯〉

美國 B商社는 國內 製造業者 K와 木脚 12,000
個 美貨 約 \$ 2,500相當額의 物品을 C&F 條件
으로 買入하는 商談을 하고 이에 따라 K에게 信
用狀을 開設해 주었다. 그런데 K는 輸出登錄業者
가 아니므로 登錄業者인 國內 N商社와의 사
이에 輸出代行契約을 締約하는 同時에 自己앞으
로 開設된 前記 信用狀을 美國의 B商社의 同意
下에 N商社로 讓渡하였다. 이에 따라 N商社는
商品을 自身의 名義로 船積하였으나 美國의 B
商社는 이를 引受時に 商品條件의 不一致를 發
見, 우선 信用狀의 元受益者인 K를 相對로 損
害賠償을 請求하려 하였으나 賠償能力이 없음을
알고 N商社에 claim을 提起하였으나 N商社가
이에 不應하므로 仲裁를 申請하기에 이르렀다.

B商社側은 K가 不良品이었다는 事實是認
하고 그 代替를 위해 새로운 商品을 보내겠다는
約束을 한 바 있으나 K가 國內에서 輸出許可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約束을 이행할 수 없
았으며 이에 B商社自身은 관계당국에 許可를
要請했으나 失敗하였고 그후 K는 倒產狀態에
빠졌으므로 L/C의 讓受人인 N商社에 이의 賠償
責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N商社側은 自身은 키미션만 받
고 K를 代行했을 뿐이므로 本 claim의 當事者가
될 責任이 없다는 點, 自身은 B商社로부터 claim
을 通知받은 事實이 없다는 點, B商社에서 主
張하는 檢查報告書는 國際的으로 認定받은 檢查

機關의 그것이 아니라는 點, 船舶到着日字와 物
品檢查日字가 一致하지 않으므로 claim는 作成된
것이라는 點등을 들어 請求가 理由 없다고 主張
했다.

仲裁判定部는 N商社가 信用狀을 讓渡받은 以
上 信用狀上의 權利 義務를 모두 承繼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비록 N商社와 K사이에 船積에
관한 免責特約이 있다 하여도 B商社와 사이에
없는 以上 當事者的 責任을 벗어나지 못 할 것
이라고 하고 다만 商品이 濕氣에 젖어 곰팡이까
지 슬었다는 點은 認定할 수 있으나 規格의 相
違나 곰팡이 다듬지 못하였다는 點이나 또 B商社
가 입은 損害額의 算出등에는 이를 뒷받침할 證
據資料가 없고 또 B商社가 N商社에 通知를 게
울리한 點으로 보아 賠償額은 US \$ 1,000로 함
이相當하다고 判定하였다.

6. 輸出商品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損害賠償請 求權.

提起商社 : 濠洲 P商社.

被提起商社 : 韓國 Y商社.

提起原因 : 商品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損害賠
償.

請求金額 : US \$ 10,000.

判定要旨 : 規格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별
반 조건을 明示한 바 없으므로 請
求는 이유 없다.

〈經緯〉

濠洲의 P商社는 「韓國產 Acrylic Yarn 2/26
DMM 100%」의 買受를 위하여 國내 Y商社와
買賣契約을 締結하고 Y商社를 受益者로 하는
US \$ 15,000의 信用狀을 開設하였고 이에 Y商社
는 信用狀 條件대로의 商品을 韓國 纖維檢查所
의 所定 檢查를 畢하여 船積하고 信用狀으로 輸
出代錢을 受領하였다. 그런데 P商社가 物品 到
着 即時 檢查한 결과 品質이 不良함을 發見하고
Y商社에 claim을 提起했으나 Y商社가 이에 不
應하자 仲裁를 申請하였다.

P商社側은 原絲가 실폐(Core)에 너무 단단히
감겨 있고 매듭(knot)과 교임(twist)이 허술한
데가 많아 다시 감아야 하므로(rewinding) 많은
費用이 소모된다고 主張했다.

이에 대하여 Y商社側은 國際慣例上 原絲의 品

質條件으로는 Count와 Twist만이 規定되고 있으며 強度나 伸度는一般的으로通用되는規格이 아니고 또 輸出商品은 船積前 檢查機關의 檢查合格을 받았음을 主張했다.

仲裁判定部는 請求人の 請求를 棄却하면서 다음과 같이 判斷했다.

P商社側은 仲裁判定部가 追加證據로서 要求한 見本을 提出하지 않고 그 후 2個의 自國內公認検査機關의 檢查報告書를 提出하였는데 兩報告書의 基準과 內容이 相互不同하여 하는 수 없이 本判定部가 信賴할 만한 國內鑑定人으로 하여금 이를 再檢討하게 한結果 大體로 所定規格의 限度內였다는 事實이 認定될 뿐 아니라 따로이 摳度 其他 基準에 대하여 條件을 明示한 바 없었다는 點으로 볼 때 本 請求는 理由없다고 하였다.

7. 輸出商品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買受人の 損害賠償請求權과 立證責任.

提起商社：英國 Y商社.

被提起商社：韓國 S商社.

提起原因：輸出商社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金額：£10,000

判定要旨：Y商社의 請求額을 인정할 만한 立證이 없으므로 S商社는 £3,000에 限하여 지급한다.

〈經緯〉

英國의 Y商社는 國內 S商社로부터 韓國產 및 太平洋產 冷凍魚類를 輸入하기 위하여 契約을 締結하고 US\$150,000과 £130,000를 額面으로 하는 두개의 信用狀을 開設하였다. 그 후 S商社는 Y商社의 양해下에 船積期日을 연장받았고 그 船積이 延期될 수 있었는데 Y商社는 S商社의 物品이 不良하다는 通知를 하였고 1967年 7月에는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書를 交換하는 한편 Y商社도 그 物品을 最善의 價格으로 賣却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Y商社는 S商社가 계속하여 不良品을 선적했다고 主張하고 契約의 解除와 함께 이로 인한 損害賠償金을 請求하였다.

仲裁判定部는 船積品中 一部가 品質이不良이었다는 主張 및 通關에 보류되어 抑留되었다는

事實은 認定할 수 있으나 그 損害額의 算出에 있어 不確實할 뿐 아니라 이의 補強資料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請求人 Y商社의 主張數字를 認定하기 困難하다고 하고 다만 이런 具體的인 算出根據에 대한 立證이 없다하여 請求를 排斥하는 것은 不當하므로 Y商社가 主張하는 品質不良品 6,000箱子 및 抑留로 인한 損失合計 £10,000 中 £3,000을 지급할 것이 타당하다 判定하였다.

8. 後契約에 의하여 仲裁條項이 刪除되었을 境遇의 先契約에 依한 仲裁判定 管轄權限의 有無.

提起商社：美國의 S商社.

被提起商社：韓國의 R商社.

提起原因：船積遲延, 船積不履行 및 品質不良을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

請求金額：US \$ 20,000

判定要旨：R商社의 抗辯이 모두 정당하여 S商社의 請求를 棄却한다.

〈經緯〉

美國의 輸入商 S는 韓國의 輸出商 R과의 사이에 韓國產 電氣製品을 美國에서 3年間一手販賣하기 위한 代理契約을 締結하였고 이에 따라 S商社는 R商社를 受益者로 하여 信用狀을 開設하였는데 그 후 兩者는 契約을 修正하였고 이後契約에서 仲裁條項이 插入되지 않았다. 그런데 R商社가 船積을 遲延시켰을 뿐 아니라 그 船積한 物品도 到着후 檢查한 결과 不良品임이 드러나 S商社는 先契約書 第8項의 仲裁條項에 의거하여 仲裁를 商社仲裁協會에 申請하였으나 R商社側은 後契約을 들어 仲裁管轄權을 否認하였다.

S商社는 先契約에 따라 最初의 信用狀을 開設하였고 그 후 이 契約에 따라 去來가 繼續되었으므로 契約이 修正되었다 하여도 그 效力은 당사자를 拘束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또 R商社의 代理人이 本件 仲裁人의 審問期日에 出席하여 審問에 응하였으므로 本件 仲裁付託에 合意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R商社側은 後契約이 先契約中 仲裁條項을 刪除하기로 合意하여 再作成된 것이고 최초의 信用狀이 後契約이 체결되기 전 開設된 것은 事實이나 그것이 그 후 船積期日이 修正되

였고 그에 의해 船積된 것이므로 去來는 修正된 後契約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또 R商社의 代理人이 仲裁人の 審問期日에 出席한 것은 仲裁에 응할 義務가 有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R商社側의 主張을 모두 認定하고 S商社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9. 品質不良에 대한 賣渡人の 責任.

提起商社 : 오스트레일리아 Y商社.

被提起商社 : 韓國 W商社.

提起原因 : 品質不良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請求金額 : US\$ 85,987.94

判定要旨 : (和解하여 判定의 形式으로) W商社는 Y商社에 US\$ 12,000를 지급한다.

〈經緯〉

홍콩 所在의 仲介商인 L商社는 國內 W商社의 物品을 오스트레일리아의 Y商社에 販賣하도록 주선하였다. L商社는 信用狀을 自己의 名義로 W商社를 受益者로 하여 開設하고 物品의 受取人은 Y商社로 하는 스위치 貿易方式을 採擇하였다. Y商社는 直接 W商社를 訪問하여 셰타類의 見本을 사진으로 提示하여 그 製造를 要請하였다. 그 후 Y商社가 이를 受領한 후 檢查한 결과 品質不良임을 발견하고 claim을 提起하였으나 意見이 맞지 않자 仲裁를 申請하게 되었다. Y商社는 위와 같은 損害와 慸籍料를 加算하여 賠償을 請求하였다.

이에 대해 W商社는 信用狀開設人은 L商社이지 W商社가 아니므로 당해 商社는 契約의 當事者가 아니라 주장하고 結局 本件은 當事者들이 서로 讓步하여 US\$ 12,000의 和解로서 終結되었다.

10. 品質不良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提起商社 ; 日本 T商社

被提起商社 ; 韓國 W商社.

提起原因 ; 品質不良으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金額 ; US\$ 25,259

判定要旨 ; (調停으로써妥協되어 判定의 形式으로) W商社는 T商社에 US\$ 10,623.60을 지급한다.

〈經緯〉

日本의 輸入商 T는 國內 縫製品 製造業者인 W商社와 아크릴 혼방 스웨터 6,400枚를 去來하기로 하는 賣買契約을 締結하였으며 이에 따라 W商社를 受益者로 하는 信用狀을 開設하였다. 이 契約에는 買受人の 損害賠償請求에는 目的地에 貨物이 到着한 후 30日以內에 賣渡人에게 通知해야 한다는 것과 買受人이 特別히 指示하지 않는 限 정부기관 제조업자 또는 賣渡人에 의한 輸出検査는 最終的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 規定되어 있다. 그런데 W商社는 作業量의 폭주로 그 船積期日을 2次에 걸쳐 延長받았으며 그 후 航空便으로 運送한 결과 物品中 60%가 不良品이라는 通告를 T商社로부터 받았다. 兩商社는 그 賠償에 대해 合意를 보지 못하고 仲裁를 申請하게 되었다.

T商社는 H商社와의 契約으로 인하여 W商社의 遲延 및 品質不良이 損害를 발생시켰으며 이 不良이 60~70%에 達한다는 것을 INTECO의 檢查로서 證明한다고 하여 賣上不能에 따른 損害額, 不良品 F.O.B 輸入代金總額, W商社에 대한 賣上不能 損害額, H商社로부터의 損害賠償請求額, 其他 品質不良으로 인하여 発생한 諸經費 등 總 US\$ 25,259.을 要求하였다.

이에 對하여 W商社側은 船積期日의 變更은 當事者の 合意가 있는 以上 商去來上 claim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고 INTECO의 檢查도 信憑性이 없어 이 claim은 판매부진을 커버하기 위한 marketing claim이라 主張했다.

結局 이 事件은 仲裁判定部의 調停으로 買上不能額 US\$ 10,623.60으로 終結되었다.

(2) 規格相違

1. 輸入品의 規格相違로 인한 輸出商의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 ; 國內 H商社.

被提起商社 ; 日本 G商社.

提起原因 ; 輸入品의 規格相違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提起金額 ; US\$ 12,701.35

判定要旨 ; G商社의 抗辯은 이유없어 G商社는 US\$ 12,598.76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經緯〉

國內技術用易會社인 H商社는 他會社로부터 컴퓨터에 의한 資料分析用役을 맡고 이를 위하여 컴퓨터用 圖解카아드 5,400,000장을 購買하기 위한 入札를 行하여 결국 日本의 G商社에 落札되었다. 이에 따라 兩商社는 信用狀을 開設하고 그에 대하여 一次分 2,400,000장을 船積하게 되었는데 H商社가 引受후 國內 I檢定會社에 依賴한 결과 카아드 中相當量이 規格上 許容하고 있는 誤差限度를 超過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되었다. H商社는 G商社에 claim을 提起했으나 이를 拒絕당하자 契約書上의 仲裁條項에 의해 國내에 仲裁를 申請하게 되었다. H商社는 I檢定會社의 檢查書에 의해 規格의 相違를 證明하는 한편 使用不能의 카아드를 集計하여 그에 따른 損害와 其他 雜費用을 請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G商社는 카아드購買에 관한 契約을 締結한 事實을 否認하고 契約書의 署名은 他目的에 使用하겠다고 하여 署名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契約書의 仲裁條項도 無效이며 信用狀의 開設目的도 國際入札에서 落札되었으므로 契約書에 의하여 開設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G商社는 設使 契約이 有效하다 하더라도 그 規格 相違에 대하여는 선적한 카아드는 H商社自身이 提供한 컴퓨터用 圖解設計에 의하여 製作된 것이지 標準品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標準品과 相違하다는 것은 請求理由가 되지 않으며 또 I檢定會社의 檢查書도 그 檢定能力과 權威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G商社가 契約書에의 署名은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라고 주장하는데 對하여 그 判斷할 만한 立證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G商社가 國際入札을 거쳐 契約을 하고 物品을 供給한 후 그 代金을 受領한 事實에 비추어 이 抗辯을 받아 들일 수 있으며 또 그 程度의 瑕疵라면 充분히 使用할 수 있다는 G商社의 主張은 理由없다라고 判定하였다. 다만 그 損害額에 대하여 H商社가 請求한 使用不能品 선별을 위한 勞賃과 檢證料는 G商社의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發生한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除外한 US\$12,598.76과 이에 대한 1974年 9月 24일부터 完濟日까지의 年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를 지급할 것을 命하였다.

2. 輸出品의 規格相異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提起商社：瑞典 S商社.

被提起商社：韓國 P商社.

提起原因：注文 輸出品의 規格相異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請求金額：\$ 17,457.23

判定要旨：(和解하여 判定의 形式으로) P商社는 US\$5,514.96을 S商社에 지급한다.

〈經緯〉

瑞典 S商社는 國내 P商社와 나일론 Jacket을 輸入할 契約을 締結하고 信用狀을 開設했으나 輸入한 製品의 包裝이나 Style이 注文한 內容과는 달라서 販賣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事實國內 P商社는 代行輸出을 하였을 뿐이고 實際 maker는 中小企業者로서 이 claim의 結果에 따라서는 企業自體의 死活이 좌우되는 問題였다. P商社는 可能한 限度의 最大의 賠償線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고.

Invoice金額(Jacket 3,531)：提起金額 \$ 9,04

6.55 賠償提議金額 \$ 3,020

Freight : 提起金額 \$ 2,056.95

賠償提議金額 \$ 685.65

도착 및 재포장비 : 提起金額 \$ 3,736.83

利益損失 : 提起金額 \$ 2,617.00

賠償提議金額 \$ 1,809.31

計 : 5,514.96

仲裁協會가 提起商社에 이를 受諾하도록 強力히 권고함으로써 원만히 解決되었다.

[3] 契約의 解除・解止

1. 契約의 解除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提起商社：西獨 E商社.

被提起商社：韓國 I商社.

提起原因：契約解除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請求金額：DM 1,275,000.

判定要旨：(和解하여 判定의 形式으로) I商社는 E商社에 DM 390,000을 지급한다.

〈經緯〉

西獨의 產業設備輸出商社인 E商社는 國내 I

商社와 particleboard plant 및 그에 수반되는 機戒와 設備를 去來하기로 하는 契約을 맺었으나 I商社는 政府의 許可를 받지 못하여 上記 契約에서 定한 지불일까지 着手金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書信으로 契約을 이행할 수 없음을 E商社에 通知하였다. E商社는 契約의 期限內 이행을 위하여 이미 作業을着手하여 이행중이라 주장하고 그때까지의 諸般費用을賠償하고 하였다.

E商社는着手金을 받지 않으면 作業을始作할 수 없다는 文句는 契約上 없으며 또着手金支拂日을 複数 지나서야 契約을 이행할 수 없음을 通知해 왔으므로 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I商社는 契約의 效力發生問題에 관하여 政府의 許可라는 條件이停止條件이라면 그 條件의 不發行으로 인하여 契約은 效力を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契約自體가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을 모두 具備하였다면 本 契約은 原始的不能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이므로 이는 當然히 無效인 것이며 單純히 契約締結上의 過失問題가 남게 되나 商社가 惡意 또는 有過失이라 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兩商社는 仲裁前 DM 300,000의 賠償金에 合意하였으나 그 후 I商社가 期限을 넘겨 버리게 되어 결렬된 후 E商社가 그 후 事情변경을 이유로 DM 1,275,00를 要求하였다. 그 후兩者는 友誼的인 和解를 바탕으로 DM 390,000의 仲裁의 判定을 받았다.

2. 合作投資契約의 契約解止確認 및 株券引渡請求.

提起商社：韓國 K電子工業社.

被提起商社：日本 J電氣(株)

提起原因：契約解止로 인한 株券引渡.

判定要旨：(和解하여 判定의 形式으로) K電子는 J電氣(株)에 ₩300萬을 지급한다.

〈經緯〉

國內 K電子工業社와 日本의 J電氣(株)는 合作投資契約을 맺고 서울에 所在하는 K-J電子(株)를 세우고 각 50%씩의 資本을 充當하고 代表理事는 K電子에서 副社長은 J電氣에서 맡기

로 하였다. 그런데 合作會社가 점점 운영난에 빠져 K會社는 이 不足을 메꾸기 위하여 副社長을 日本에 보내 資金支援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J電氣는 이에 不滿을 表示하고 副社長편으로 K電子와의 合作投資契約의 파기와 合作會社의 株式全量을 K電子에 讓渡한다는 것을 内容으로 한 覺書를 보내왔고 K電子는 이에 응하여署名捺印하였으며 J電氣가 支拂保證한 3千萬원의 銀行債務를 J電氣가 辨濟하였다. 그런데 그 후 그 株式의 讓渡가 無償이냐 有償이냐에 따라 紛爭이 일어나 仲裁를申請하게 되었다. K電子側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合資投資契約의 解止確認 및 株券引渡를 請求했다.

첫째, J電氣가 生產品의 全量輸出을 保障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國內販賣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免稅폐지의 負擔으로 會社가 운영난에 빠진點.

둘째, J電氣側과의 通話에서도 無償讓渡가 確認된點.

셋째, 당시 株式의 價格이 全無하였고 口頭로 조차도 有償讓渡를 거론하지 않은點, 覺書交換이 심한 경영난에 봉착한 후 해결책으로 인한것인 點등의 주위 事情으로 보아 無償讓渡이었음을 確證할 수 있다는點.

넷째, J電氣가 은행에 대해 債務를 辨濟한 것은 각각 株主로서의 責任을 分擔하자는 취지였으며 설사 求償權이 있다 하여도 株式의 引渡를 拒否할 수 없다는 등이다. 이에 대하여 J電氣側은 우선 K電子側이 本件清算에 대하여 한 번도 舉論한 적도 없으므로 아직 仲裁申請의 權利가 發生하지 않았고 또 K電子가 一方의 부실한 운영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J電氣가 債務의 代位辨濟까지 한 이상 株式의 無償讓渡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結局兩者는 J電氣가 관계 은행이나 會社의 株主總會 本件 처리 결과 보고에 있어 無償讓渡만은 할 수 없는 곤궁한 事情이 있음을 피력하고 投資分에 대한 2.3할 程度의 債還을 要求함으로써 劇的妥結을 보아 仲裁判定의 形式으로 韓貨 300萬원의 債還條件으로 株式를 引渡하기로 하였다.

[4] 其 他

1. "On Board" Air Way Bill의 發給과 機積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 : 日本 K商社

被提起商社 : 國內 E商社

提起原因 : "On Board" Airway Bill의 發給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請求金額 : \$ 9,960

判定要旨 : (和解가 되어 判定의 형식으로) E商社는 K商社에게 \$ 2,500을 支給한다.

<經緯>

國內 C商社와 人毛假髮製品의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信用狀을 開設한 日本의 輸入商 K商社는 우선 1次로 4,800個의 製品을 機積하였고 나머지 7,100個에 대하여는 E商社가 發給한 "On Board" Airway Bill을 믿고 C商社에 全額을 支給하게 되었다. 그런데 事實上 製品이 機積되지 않았으므로 E社는 K商社에 대해 이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되었고 E社는 K商社와의 交渉을 거쳐 機積期日을 延長하고 C商社 代身 이를 機積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K商社는 E社의 代身機積에 있어서도 150個가 欠缺되었으며, E社와의 合意는 결코 C商社의 機積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을 抛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趣旨로 claim을 提起하였다. 이에 대하여 E社는 150個의 欠缺은 그 代金에相當하는 金額을 送金할 것이며 合意條件에 따라 履行하는 E社에 대하여 事實上去來 當事者도 아님에도 不拘하고 過多한 賠償을 請求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結局이 事案은 商事仲裁規則 第52條에 의한 和解가 되어 E社가 K商社에게 \$ 2,500을 支給하기로 되었다.

2. 輸出業者の 獨占販賣權 契約에 따른 커미션 支給義務.

提起商社 : 사우디 아라비아 B商社

被提起商社 : 國內 S商社

提起原因 : 커미션支給義務의 不履行

請求金額 : 美貨 \$ 85,864 및 完濟日에 이르기 까지의 遲延損害金.

判定要旨 : 새로운 約束은 유효하므로 그 이후

의 커미션 US\$ 25,000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經緯>

사우디 아라비아의 B商社는 國內 S商社와 아라비아灣 地域의 國家들에 S商社 製造의 機械를 紹介 販賣하기 위한 獨占販賣契約을 締結하고 또 B商社는 每月 US\$ 10,000以上的 購買責任을 지게 되었다. 그 후 1個月이 지난 1968年 8月 23日에 契約의 一部를 修正하여 B商社가 S商社를 代理하여 S商社의 地域代理店을 指名할 權限을 부여 받고 또한 S商社는 獨占地域에 販賣하는 機械의 오퍼價格에 B商社를 위하여 C&F價格의 5% 커미션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商社는 各地에 S商社의 地域代理店들을 指名하고 이들을 S商社에 紹介하였고 이에 S商社는 5%의 커미션을 支給하였다. 그 후 S商社와 B商社는 커미션을 FOB價格의 3%로 引下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런데 그후 代理店 K商社가 製品價格에 B商社의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排除하기를 強力히 要求하자 S商社는 커미션을 US\$ 2,000以上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一方的으로 通告를 하였는데 B商社는 이를 拒絕하였다. 그리고 K商社가 B商社와의 合意覺書로써 美貨 \$ 3,000에 B商社가 커미션을 포기했다고 S商社에 알려왔으므로 S商社는 이를 믿고 1972年 1月 7日 B商社에 대해 커미션을 支給하지 않겠다고 通告하였다. 그러나 B商社는 이 覺書를 否認하고 끝내 1972年 10月 25日 커미션支給을 確約하는 書面을 S商社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S商社가 이를 履行하지 않고 1974年 1月 7일에는 B商社의 權利를 抹消하기 위하여 契約의 解止通告를 하자 B商社는 仲裁申請을 하기에 이르렀다.

B商社는 當該 商社인 S商社로부터 아라비아地域의 獨占總販賣代理店으로 指名받았으므로 1974年 1月 7日 S商社가 解止通告를 할 때까지의 未拂手數料 및 그 밖에 損害들을 賠償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또 덧붙여서 當該 商社는 exclusive agency로서 그 地域에서 이루어지는 모든去來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權利가 있다고 하였다. 또 B商社는 K商社와의 確認覺書는 K商社

職員 M氏에 의하여 變造됐다는 것과 申請人 B氏가 K商社에서 月給을 받는 雇傭人이 아니라는 것을 主張하였다.

이에 대하여 S商社는 B商社를 아라비아 地域의 sole distributor로 指名한 것은 B商社를 買受人을 紹介해주는 單純한 仲介으로서가 아니라 完全히 獨立한 買受人으로 본 것이며 이는 先契約時 口錢에 대한 約定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또 後契約에서 local representative를 指名할 權利를 委任하고 이에 커미션을 約定한 것은 B商社가 指名된 agent와 直接 交涉할 境遇를 위한 것이며 구태여 그 必要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趣旨를 明白히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B商社가 커미션을 받을 權利가 없다 하였다. 또 S商社는 B商社가 設使 커미션을 받을 權利가 있다하여도 去來實積이나 努力이 없었으며 確認覺書라든가 申請人 B氏가 K商社의 有給 고용인이라는 事實들을 들어 支給義務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仲裁判定部는 S商社가 B商社에게 US\$ 25,000을 支給하여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判定하였다.

먼저 S商社는 아라비아地域에 機械를 輸出함에는 B商社以外에는 할 수 없고 B商社도 반드시 S商社로부터만 輸入해야하며 아라비아地域外에는 再販賣輸出을 못한다고 約定한點, B商社는 每月 US\$ 10,000 以上的 機械를 輸入하겠다고 保障한點, B商社가 市場擴張이나 販賣促進을 잘못하면 1個月前의一方의意思로 契約을 解止할 수 있게 한 點등으로 보아 B商社가 獨占的인 買受人の地位에서 契約을 締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 후 1968年 8月 23일의 契約에서 local representative를 指名할 權限을 B商社에게 부여하고 5%의 커미션支給을 約定한 것은 先契約에서의 B商社의 獨立的 買受人으로서의 地位를 commision agent로 고쳤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K商社가 B商社와 \$3,000에 커미션을 抛棄하는 契約을 하고 그 覺書를 B商社에 보내면서 커미션을 排除 할것을 強力히 要求하였으므로 1972年 1月 7일 S商社는 이 事實을 B商社에 알리고 앞으로의 커미션은 年間一回에 \$2,0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趣旨를 通告한事

實이 認定된다. 따라서 1972年以後부터는 輸出價格에 커미션을 포함시킬 수 없었음은 明白하다. 그러나 1972年 10月 25일 B商社에 대하여 F.O.B價格의 3%에 該當하는 手數料를 支給하겠다고 約束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바 이때부터는 다시 새로운 約束이 效果를 發行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73年分 約 US\$ 95,000을 基準으로 한 커미션을 支給해야 할 것이며 다만 諸般 사정을 참작하여 S商社가 B商社에게 US\$ 25,000을 支給함이相當하다.

3. 輸出代行商社의 代理權 跡越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 衣類品 製造業者 D商社.

被提起商社: 貿易代行業者 S商事

提起原因: 代理權 跡越로 因한 損害賠償.

請求金額: 1,186,860원

判定要旨: S商社가 全部 負擔한다는 約束을 한 이상 운송비와 過失相計의 控除額을 除外한 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S商社는 D商社에 900,000원을 지급한다.

〈經緯〉

美國 L商社로부터 衣類輸入을 의뢰 받은 國內 D商事는 L商事와의 契約을 이행하기 위하여 貿易登錄業者인 國내 S商社와 輸出代行契約을 맺었는데 그 후 D商社의 製造遲延으로 인하여 S商社는 L商社로부터 引受拒絕通知를 받게 되었다. 이에 S商社는 所要金額을 負擔한다는 條件으로 L商事로부터 船積期限의 延長을 받게 되었고 그 후 船積이完了되고 代錢을 受領하여 그 중 L商事에게 負擔했던 所要金額을 控除하고 D商社에게 殘額을 支給하였으므로 D商社는 이에 代理權 跡越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기에 이르렀다.

D商社는 製品의 遲延은 S商社를 通하여 輸入한 原綿不良에 原因이 있으며, L商社와의 合意에 있어서도 D商事의 承諾이나 參與 없이 이루어 졌으며, S商社가 그 負擔을 하겠다는 覺書까지 있다고 主張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S商社는 S商社가 負擔한다는 約束을 한 것은 事實이나 그 當時に 輸出을 하지 않으면 안 될 切迫한 狀況에 놓여 있었고,

L商社와의 合意時 그 參與를 D商社에 慾憑하였으나 D商社側에서 이에 不應하였고 또 製品의 遲延은 原綴不良이 아니라 D商社가 第三者를 위한 作業에 從事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主張을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事實에 대해 S商社가 船積品에 대하여 D商社가 目的港을 變경하였으므로 所要된 陸送費를 除外하고는 全部 S商社가 負擔한다는 約束을 한 것을 認定하고 있고 그 約束을 할當時에 D商社가 故意나 過失로 인한 不當한 行爲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S商社가 그 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製品 遲延이 D商社의 잘못으로 因한 것이라고 認定할 수 있고 陸送費는 D商事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S商社가 D商社에게 金 900,000원 整을 支給할 것을 判定하였다.

4. D/A條件 輸出商品代錢 支給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提起商社：國內輸出商社 S

被提起商社：괌島輸入商社 R

提起原因：商品代錢 支給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提起金額：US \$ 18,084.25

判定要旨：R商社가 船積書類를 추인함으로써 스스로 購買 要請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US \$ 15,055.95에 한하여 R商社는 S商社에 지급한다.

〈經緯〉

國內 S商社는 괌島의 R商社에 韓國產土產品을 다음과 같은 條件으로 輸出하기로 契約하였다.

- ① 金額：US \$ 150,000 (C.I.F 條件)
- ② 注文：物件의 購買는 R商社의 注文이 있을 때.
- ③ 船積條件：
 - i) 商品은 R商社의 社長이나 그의 指名者가 檢查한 후 船積할 것.
 - ii) 分積許容
- ④ 船積期限：1971年 12月 31日
- ⑤ 引渡條件：D/A條件 (推尋어음 引受와 同時に 船積書類를 引渡, 그 後 120日內에 支給條件)

그 후 S商社는 第1次船積分인 美貨 \$ 15,055.

95相當의 韓國土產品을 R商社支配人 M氏의 物品検査書를 받아 Y號便으로 積送하고 그 船積書類를 具備하여 國內 E銀行에 輸出환어음에 대한 推尋依賴를 하였는데 R商社는 物品이 괌島에 到着한 후 그곳所在 A銀行이 提示한 船積書類와 推尋어음의 引受를 遲延시켜 오다가 그 후 R商社 社長이 來韓한 機會에 兩當事者의 合意를 거쳐 契約書를一部修正한 후 괌島로 가는 即時 어음을 引受하겠다고 約束하였다. 그러나 R商社 社長은 돌아간지 한 참이 되서야 어음을 引受한 後 그것도 120日이 經過한 후에도 끝내 어음의 決濟를 하지 않았다.

이에 S商社는 條件대로 履行하였음을 主張하고 輸出代錢 및 E銀行이 S商社의 擔保物을 公賣處分함으로써 입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R商社는 S商社가 R商社의 注文이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物品을 著集했으며 檢查適格者도 아닌 M氏의 檢查를 받아任意로 船積한 것이므로 契約條件의 違返이라 하고 또 R商社가 어음의 引受를 拒絕한 것은 괌島通關에 있어 B/L原本을 提示하지 않은 不法通關이었기 때문이고 韓國에서 어음引受를 約束한 것은 R商社가 名目上의 讓受人으로서 何等의 責任이 없음을 分明하게 하는 約束이었다는 點을 들어 物品의 代錢에는 責任이 '없다고' 主張하였다.

仲裁判定部는 먼저 M氏의 適格與否에 대하여는 비록 S商社가 提示한 證據를 가지고는 M氏가 支配人이라는 事實을 立證하기 곤란하나 R商社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異議를 提起한 바가 없고 M氏에 의하여 代理署名된 檢查書를 受理하였다는 點으로 볼 때이署名은 無效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S商社가 注文없이 船積하였다는 主張에 대하여는 R商社가 그 違反事實이나 受理拒否意思를 S商社에 通報한 事實이 없으며 더구나 그 후 船積書類를 追認함으로써 스스로 購買要請한 事實을 認定하였다고 判斷하였다.

따라서 仲裁判定部는 輸出代錢 US \$ 15,055.95에 限하여 請求를 認定하였다.

5. 當事者間에 約定한 claim提起期間을 經過한 claim의 效力

提起商社：自由中國 B商社

被提起商社：韓國 A商社

提起原因：商品의 品質不良

請求金額：US \$ 6,681.15

判定要旨：CIF契約에 따라 危險負擔의 責任이
買受人에게 이전된 후에 買受人の
責任이 아님을 주장함은 부당하므로 B商社의 請求를 기각한다.

〈經緯〉

韓國의 A商社는 自由中國의 B商社에 다음과 같은 條件으로 韓國產 漢藥材 10,000kg을 輸出하는 契約을 맺었다.

1. 品質：4年 내지 5년 이상된 一等 品質의 것으로서 見本이 提示되었으면 그 見本과一致되어야 하고 見本이 提示되지 않았다면 前年度 標準品의 品質로 한다.

2. 數量 및 價格

輸出量은 每年 10%씩 늘리기로 하고 物品單價도 kg당 前年度 價格에 5%씩을 增額하기로 한다.

3. 클레임

클레임은 物品이 目的地에 到着한 후 10日以内에 電報로써 通知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國際的으로 公認된 檢查機關의 檢查報告書를 送付하여야 한다. 또 이 契約과 관련하여 發生하는 클레임이나 紛爭은 相互間 和解로써 解決하기로 하되 이에 失敗할 경우에는 公認된 韓國仲裁委員會에서 調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契約條件에 의해서 A商社는 B商社로부터 1,860kg의 藥材를 注文받고 이에 대한 C.I.F.價格의 信用狀을 받았다. 이 藥材는 1973年 4月 15日 自由中國의 基隆港에 到着하였으나 稅關上의 問題가 생겨 實地 通關이 完了된 것은 1973年 6月 25일이었다. B商社는 1973年 7月 3日 品質이 損傷되었음을 口頭로 A商社에 通知하였으며 또한 10日 후인 1973年 7月 5日에 現地 檢定會社인 C社로부터 商品의相當한 부분이 變質되었다는 檢查를 받았다. 이에 B商社는 A商社에 US \$ 6,681.15의 賠償을 請求하였으나 拒絕당하자 仲裁를 申請하기에 이르렀다.

B商社는 自身이 同 物品을 實際로 受領한 것은 6月 26일이었으며 受領 即時 通告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到着한 物件을 管理할 수 없었던

것은 B商社로는 어찌 할 수 없었음을 들어 責任은 全的으로 A商社側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A商社는 claim提起 契約期間을 경과하였으므로 claim은 당연히 無效라고 B商社가 高價物에 대한一般的인 國際慣例에 따른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주張하였다.

仲裁判定部는 物品 出荷前이라든가 輸送途中에는 變質要因이 될 瑕疵가 있음을 發見하지 못했고 또 物品到着후 70日이 경과한 때서야 檢查하였다는 것은 大韓民國 商法 第69條의 商事實買의 規定上 賣渡人の 責任이 될 수 없으며 國際慣例上 C.I.F.契約에서의 物品의 危險負擔에 관한 責任은 輸出商品이 船舶의 欄干을 有效하게 通過한 때부터 買受人에게 移轉되는 바 B商社가 通關節次上の 理由로서 責任이 없음을 주장함은 不當하다고 보아 B商社의 請求를 棄却했다.

6. 條件違反을 理由로 引受를 拒絕한 商品이 損失되었을 때 그 代錢의 支給責任.

提起商社：日本 T商社

被提起商社：國內 M商社

提起原因：引受拒絶된 商品이 燃失되었을 때 그 代錢支給責任

請求金額：US \$ 1,545

判定要旨：T商社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T商社의 請求를 기각한다.

〈經緯〉

日本의 T商社는 國內 M商社에 대하여 포리에 틸렌 包裝材 等 美貨 約 US \$ 3,000相當額의 物品을 F.O.B條件으로 賣渡할 것을 約束하고 이에 따라 M商社는 信用狀을 開設하였고 이 信用狀에는 分割船積 禁止條件를 挿入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T商社는 前記 物品의 一部를 우선 第一次 船積分으로 하여 分割船積하여 왔었으므로 M商社는 이에 대해 信用狀 條件違反을 理由로 物品의 引受 및 관계여음의 支給을 拒絕한 事實이 있었으나, 그 後 特히 賣渡人이 航空便으로 積送함으로써 引受를 特別要請하여 온 第2次 및 第3次 積送品에 限하여서는 이를 引受 및 支給要請에 應하였다. 그런데 第1次 船

積分의 引受拒絕品은 國內 P港의 保稅倉庫에 藏置中 賣渡人이 買受人에 對하여 引受交渉을 進行하고 있는 동안 不意의 火災事故로 인하여 燃失되었으나 買受人을 受益者로 한 附保期間은 이미 經過한 以後으로 T商社는 이는 商品引渡後 發生한 損失이므로 危險負擔의 責任이 買受人側에 있음을 主張하고 claim을 提起하였으나 M商社가 이에 不應하자 仲裁를 申請하였다.

T商社側은 同 注文品이 F.O.B條件이므로 揚陸 후 燃失에 對한 責任은 M商社가 져야 한다고 하고 L/C條件을 違反하여 分積한 事實에 對하여는 이미 M商社側에 謝過電報를 보낸 바 있다는 點과 M商社가 1次 船積分은 拒絕하면서 第2次, 第3次 船積分만을 引受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點 등을 들었다. 이에 對하여 M商社側은 第1次 船積分은 禁止條件 違反이므로 引受를 拒絕한 것이며 第2次, 第3次 船積分은 T商社側에서 運賃을 負擔하고 航空便으로 보내왔고 또 어음 代錢은 發行된 어음別로 支給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므로 第2次, 第3次 船積分의 代錢에 限하여 支給하였던 것이므로 그一次 船積分에 限하여 引受拒绝한 것은 正當하다고 주장하고 保險證券의 有效期間이 56日이나 경과한 후에 燃失되었으므로 自身이 填補받을 수도 ないと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M商社側이 引受拒绝意思를 T商社에게 即時 通知하였다는 事實, 그 후에도 繼續 同 引受를 要請하는 事實, 또 船荷證券이 貨物燃失時까지 S銀行 本店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는 事實, 商業荷附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第8條의 規定의趣旨로 보아 未引受貨物의 實質的인 차분권은 請求人側에 留保되어 있다는 點, 또 T商社側에서 引受가 拒絕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保險 등 危險防止의 措置를 講究하지 않았다는 點들의 理由로 請求를 棄却한다고 判定하였다.

7. 包裝不完全으로 인하여 발생한 輸出商品의 損毀에 대한 損害賠償.

提起商社：西獨 S商社.

被提起商社：國內 T商社.

提起原因：包裝不良으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金額：DM 7,916.50

判定要旨：T商社는 DM 1,354.50에 한하여 S商社에 지급한다.

〈經緯〉

西獨 S商社는 國內의 T商社와 韓國產 裁縫機 200臺를 FOB釜山港 價格, 買受人 附保責任 無故障海上 船荷證券의 送付, 馬糞紙 箱子包裝 등을 條件으로 하여 輸入하기로 契約을 맺고 이에 따라 T商社는 同 物品을 目的地에 送付하였다. 그런데 S商社가 物品의 到達 即時 專門 檢查機關의 檢查를 거친 결과相當量의 損毀物品이 發見되었는데 한편 T商社는 그該當 損毀部分에相當하는 附屬品을 無換으로 送付하였다. S商社는 檢查報告書와 함께 未盡한 賠償部分의 claim을 請求하였는 바 T商社가 이에 응하지 않자 仲裁를 申請하게 되었다.

S商社側은 無料로 송부 받은 세로운 部分品을 代替하는데 必要한 勞賃支拂金(700臺×2時間×DM14)과 損傷으로 인한 販賣損金(200臺×DM10) 및 檢定費用의 賠償을 請求하고 또 物品의 損毀이 包裝不良에 기인한 것임으로 그填補를 保險會社로 부터 받을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對하여 T商社側은 FOB條件을 내세워 그 損毀에 對한 것은 買受人の 附保責任에 따라 買受人이 保險會社에 請求할 性質의 것이라하고 또 T商社가 責任이 있다 하더라도 販賣損失金에 對하여는 이미 部分品을 送付하게 하였으므로 販賣損失을 보았다는 S商社의 주장은 不當하며 修理費請求에 있어서도 破損臺數와 時間當勞賃의 주장도 過多하고 檢定料 程度는 賠償할用意가 있다고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첫째, 本件 契約이 FOB條件이고 그破損이 海上輸送途中에 발생하였음을 認定할 수 있으나 契約上의 馬糞紙箱子의 두께가 裁縫機를 보호하기에 不足하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으므로 破損에 對한 賠償責任이 있다 하였고,

둘째, 損害額에 對하여는 販賣損失主張은 代替品의 種類로 보아 代替만하면 하등 흠이 되지 않는 部分이므로 代替部分品과 代替費用을 变更한다는前提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고 臺數 및 時間에 관하여도 過多하게 되어 있고 檢定費用에 對하여는 T商社가 이를 認定하므로 DM1,354.50

에 限하여 請求가 相當하다고 判定하였다.

8. 工事代金의 確認請求

申請人 : A

被提起商社 : Y商社

提起原因 : 工事代金의 確認

確認金額 : 191,368,000원

判定要旨 : A의 主張대로 別途로 工事を 할
必要가 없다.

〈經緯〉

A를 代表로 하는 申請人은 被申請人 Y의 國際公開入札에 應札, 約定 都給額 22억 9,880만 원으로 契約을 締結하였다. 그런데 契約의 內容中 落札者는 契約署名후 30日 以內에 物量上의 모든 價格單價明細書를 提出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中 第6項의 經常費, 危險負擔金 및 利益金에 해당하는 191,369,000원에 대하여 Y商社는 二重으로 算定된 것이라 주장하고 別途의 工事を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A는 仲裁를 申請하게 되었다. A側은 Y商社가 單價明細書의 作成方法이 틀렸으므로 別途로 工事を 하

라고 하나 A가 申請한 金額이 最低金額이었던 까닭에 A에게 落札된 結果로서 都給金額이 確定된 이상 그 單價明細의 作成方法을 가지고 異議를 提起함은 언어도 단이며 A가 採擇한 作成方法은 國公有企業體 其他 一般工事에서도 흔히 쓰는 方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Y商社側은 本 契約이 單價中心契約임이 契約條文에 明示되어 있고 또 A가 公課雜費라고 주장하는 第6項의 費用은 miscellaneous cost이기 때문에 A가 算定한 費用들은 이미 각 單價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仲裁判定部는 첫째, 單價契約여부에 대하여는 契約條文上으로는 數量單價와 契約이 不一致할 때는 單價가 우선한다는 뜻에 不過하다고 보아 本 契約은 單價契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고 둘째, miscellaneous cost는 A의 主張과 같이 解釋되며

셋째, A의 作成方法이 一般的으로 作成되는 것으로 보아 A의 主張이 타당하고 別途로 工事を 해야 할 必要가 없다고 判定하였다.